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 상한을 확대 및 민간위원에 관한 내용 추가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3조)
- “서울시 지명위원의 겸임 조항” 삭제(현행 제2조제4항)
-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의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9조의2)
- 위원의 출석 수당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구성)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의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현행의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겸임 조항은 삭제함. 다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이 명백하게 명시되지 않은바, 지명위원회 회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세칙 마련 시 명확한 자격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임기)는 시행령 제87조의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안 제4조(해촉)는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해촉 사유에 대한 위임을 바탕으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조항이 있음에도 본 조례에 해촉 사유를 추가한 것은 시행령에서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는 상위법령 제89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조례 제9조의2(승인)를 삭제함. 해당 조항은 「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지명을 확정하기 위해” 상정된 바 있고,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 다만, 이 조항의 근거는 상위법에서 찾을 수 없어 삭제하고, 관계법령에 근거한 심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법령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 제10조(수당)를 삭제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4조와 중복되어 삭제함.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고,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삭제하여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1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이규선, 유승용, 이성수

우경란 의원(4인)

###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최대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울시 지명위원의 겸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4항 삭제)
- 다.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바.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

(안 제7조)

- 사. 의회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심의·의결 및 결정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위배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현행 제9조의2 삭제)
- 아. 위원의 출석 수당은 위원회 관련 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별도로 이에 관하여 정한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 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보고의무를 정비함(안 제12조)
- 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보다는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카.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함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보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을 심의·의결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